

2012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대한민국 실시 모집요강

* 대한민국 을시대상자는 반드시 본 모집요강을 참조하여 신청 할 것.(2011년도 시험실시하여 2012년도 장학금 지급)
*일본 문부과학성 모집요강을 기본으로 대한민국 내 실시 요강을 작성함에 있어 추가된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였음.

연구유학생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2012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의해, 일본 대학에 있어 연구 유학생으로서 연구를 실시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아래

1. 모집분야

일본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로 한다.

다만, 각 일본대사관 등(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이 해당국 별로 특정모집분야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의학, 치학 및 복지학 등을 전공하는 자는, 일본 법률에 근거,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얻을 때까지는, 진료, 수술 등 임상 연수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가부끼나 일본무용 등의 전통 예능, 공장 등에서의 특정 기술, 기능 등의 실무 연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1) 국적 : 일본정부와 국교가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이때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대상이 된다. 다만, 신청 시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선고는 응모자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소재하는 일본 대사관 등에서 실시한다.

(2) 연령 : 1977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

(3) 학력 : 일본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덧붙여 일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해당자로 한다.

① 외국에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16년(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을 이수하는 박사 과정 입학에 대해서는 18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② 대학원에서, 개별 입학자격심사에 의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2 세(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을 이수하는 박사 과정 입학에 대해서는 24세)에 이른 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주1) 상기 이외의 자격에 의해 일본의 대학원 입학 자격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한, 박사 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응모가 불가하다.

(주2) 학부와 대학원 각각의 성적이 70%이상일 것(응모 마감시점 현재).

(주3) 국외교육기관 졸업자는 5.전형 및 결과 통지와 같이 개별점수가 가능하다.

(4) 전공 분야 :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 또는 이와 관련한 분야로 한다. 일본 대학에서 연구가 가능한 분야일 것. 또한 전공분야 선택시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깊게 관련이 있을 것. 또한, 복수 부전공한 분야로 응시할 경우 복수 부전공 분야 취득 단위(학점 및 성적)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

(5) 일본어 등 :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려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해 관심이 있고, 도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또한, 일본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질 것.

(6) 건강 : 심신 모두 대학에서의 학업에 지장이 없을 것.

(7) 도일 시기 :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사이, 또는 동년 일본의 대학이 정하는 각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로부터 시작하여 전후 2주 이내, 수용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원칙적으로 9월 혹은 10월)까지 반드시 출국하여, 도일 가능한 자. (소정의 시기에 도일할 수 없는 경우는, 도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덧붙여 본인이 몇 가지 도일 시기를 희망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대학의 형편에 따라 희망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8) 사증 취득 : 도일 시 「유학」 사증을 반드시 취득할 것. 또한, 채용된 자가 예외적으로 채용 전에 「유학」 이외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여 일본 내에서 자격을 변경할 경우는, 장학금 지급 개시 예정 월의 전월 말일까지 재류자격을 「유학」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일본에 입국 후 재류 자격을 「유학」 이외로 변경한 자에 대해서도, 재류 자격 변경 시점에서 일본정부장학금 유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할 것.)

(9) 기타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①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의 자격의 자(응모 마감 현재까지 군소속이 아닐 것).

② 받아들이는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에 도일할 수 없는 자.

- ③ 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3년 이상의 교육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다만, 귀국 후, 재적 대학을 졸업한 일본어일본문화연수 유학생 및 귀국한 일한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이 연구 유학생으로서 응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이미 재류 자격 「유학」으로 일본의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 및 자국에 있어서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사비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일본 대학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자. 다만, 현재 일본에 유학중인 사비 외국인유학생이라도, 연도 내에 수료하고 귀국할 것이 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⑤ 본 제도에 의한 장학금과 종복하여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는 자.
- ⑥ 각 자격 및 조건에 대하여, 「졸업예정자」는, 소정 기한까지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 또한, 을모 마감 현재 학부졸업 예정자 중 휴학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⑦ 신청자가 공무원, 교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할 경우에는 유학이 가능하다는 사실 증명서류를 면접서류 마감이전까지 제출해야 함.

3. 장학금 지급 기간

장학금 지급 기간은, 도일 후 재적하는 각각의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다.

- (1) 도일 후, 연구생, 과목 등 이수생, 청강생 등 (이하 「연구생 등」이라고 한다.)으로서 재적하는 경우

- ① 2012년 4월에 도일할 경우 :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2년간
- ② 2012년 10월에 도일할 경우 : 2012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1년 6개월간

(어느 경우에도, 일본어 예비교육이 필요한 자는 6개월간의 일본어 예비교육 기간을 포함한다.)

- (2) 도일 후,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 과정 및 전문직 학위 과정에 재적할 경우는, 도일 시기에 관계없이, 각각의 정규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표준 수업 연한)으로 한다. (일본어 예비교육이 필요한 자는 6개월간의 일본어 예비교육 기간을 가산한다.)

또한, 연구생 등으로부터 대학원 정규과정, 혹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과정으로부터 박사과정에 진학을 희망하는 자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섬사 후, 장학금 지급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연구생 등으로서 장학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또한,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과정에 진학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단, 이 경우라도 사비 유학생으로서 진학 또는 재학하는 것은 가능.)

다만, 연구생 등으로부터 대학원의 정규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연구생 등으로부터 정규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장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할 것.

- ① 이과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 도일 월로부터 계산해서 24개월째 말일까지 정규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자
- ② 문과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 도일 월로부터 계산해서 25개월째 말일까지 정규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자
- ③ 이과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 도일 월로부터 계산해서 13개월째 말일까지 정규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자
- ④ 문과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 도일 월로부터 계산해서 24개월째 말일까지 정규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자

※단, 진학은 위의 ①~④에서 기술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또한 정해진 장학금 지급기간 내에 또는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달의 직후 달까지 진학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장학금 등

- (1) 장학금 : 2011년도는 월액 150,000엔(연구유학생 등), 152,000엔(석사과정 및 전문직 학위과정), 153,000엔(박사과정), (특정 지역에 있어서 수학 연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액단위로 가산. 또한,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을 지급한다. 다만,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했을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다음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기간에 관한 장학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① 신청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 ③ 대학 또는 일본어 등 예비교육기관에 있어 퇴학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혹은 제적되었을 때.
- ④ 학업성적불량이거나 정학 등에 의해 표준 수업 연한 내에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⑤ 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 4에서 정하는 「유학」 재류자격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 되었을 때.
- ⑥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서 특정된 것을 제외한다.)의 지급을 받았을 때.
- ⑦ 채용 후,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과정에 진학할 때.

(2) 여비 :

① 도일 여비 : 문부과학성은, 여행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도일하는 유학생의 거주지 근처의 국제공항으로부터 나리타 국제 공항(또는 받아들이는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도일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근처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도항에 필요로 하는 특별세, 일본내의 여비 등은 유학생의 자기 부담으로 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한다.) 또한, 국적의 나라 이외로부터의 항공권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도일하는 경우의 도일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덧붙여 입학허가를 얻을 목적으로 도일하는 경우의 도일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귀국 여비 :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월내에 귀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근거,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받아들이는 대학이 통상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으로부터 해당 유학생이 도착하는 장소부근의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주) 도일 및 귀국 여행시의 보험금은 유학생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또한, 출발 및 도착공항은 유학생이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의 공항으로 한정한다.

(3) 수업료 등 : 대학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 검정료는 일본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정규생으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의 입학 검정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5. 전형 및 결과 통지

(1) 일본정부 재외공관은, 해당국정부의 협력을 얻어, 신청서류, 필기 시험 및 면접에 근거해, 제 1 차 전형을 실시한다.

(2) 필기 시험은, 일본어와 영어로 한다.

(3) 각 전형에 해당하는 심사 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서류 심사 : 학부를 포함한 최종 출신대학에서 전체 평균성적이 70% 이상의 성적일 것,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것, 구비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것 등.

- 제출 마감: **2011년 5월11일(수) 14:00이전까지**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우편의 경우 5월4일(수) 소인까지만 마감일이후에도 도착하더라도 유효처리함.)

- 제출 방법: 각 대학(학부과정)이 총장(학장)명의 공문서와 함께 응시자 서류를 수합하여 제출(각 응시자는 졸업 또는 졸업 예정 학부 담당부서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응시자가 직접 접수는 불가)해야 함. 상세 내용은 아래 7. 응모절차 참조.

- 제출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

우편번호: 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자 앞

전자메일: kyu.ho.cho@so.mofa.go.jp

- 제출 서류: 7. 응모절차의 제출 서류 (1)필기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 서류 심사: 최종선발인원의 약 10배수 정도 예정

- 심사 방법: 제출된 서류 중 각 응시자 학교 성적 및 연구계획, 서류 등을 심사하여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예정(우선 순위는 학교성적, 연구계획, 서류 준비가 우수한 사람을 우선함)

- 결과 발표: **2011년 5월19일(금)이전까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필기시험 대상자 및 수험번호 발표예정

② 필기 시험 :

- 시험 일시: **2011년 5월22일(일) 12:00-18:30** 예정(필기시험 대상자 발표시 시험 시간 등 상세 내용 안내)

- 시험 장소: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출구 5분), 제주총영사관 예정

- 대상 인원: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단, 추후에라도 서류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함)

- 선고 내용: 문과계(일본어관련, 인문사회관련) 분야는 일본어, 영어 필기시험, 이과계 분야는 일본어, 영어, 수학 필기시험(단, 수학시험은 자격시험으로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일 것). 각 관련 3분야별로 일본어와 영어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합산성적 상위 자 순으로 면접 대상자를 결정하며, 각 과목별 성적 50점 미만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단 동점자일 경우 일본어성적 우수자 우선함. 시험은 일본어 영어 수학순.

- 선고 방법: 응시자는 각 지원 분야(일본어관련, 인문사회관련, 이공계관련)를 선택해야 되며, 선택한 관련분야별 응시자 비율에 의해 면접대상 인원이 정해 진다. 단 면접에서는 일본어관련과 인문사회관련 분야가 문과계로 통합되며, 문과계와 이과계 두 그룹으로 나뉘어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대상자 비율에 따라 최종 추천인원이 결정됨.

-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필기도구(흑색 볼펜) 등

- 결과 발표: **2011년 6월10일(금)이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대상자 발표예정

③ 면접 : 일본 유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일본의 대학에 대한 정보수집을 실시하고 있는 자일 것 등.

또한, 일본어 또는 영어의 회화 능력에 대하여, 일본의 지도교원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학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다만,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전공 분야를 희망하는 자에 있어서는, 상당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 시험 일시: 문과계(일본어관련, 인문사회관련 분야): 2011년 6월20일(월)-22일(수) 종일 예정, 이과계(이공계관련 분야): 2011년 6월27일(월)-28일(화) 종일 예정.(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면접대상자발표시 확정일정 발표예정)
- 시험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예정
- 대상 인원: 최종합격예정수의 약 두배 정도
- 제출 마감: **2011년 6월14일(화) 16:00시 이전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필적
- 제출 서류: 7. 응모자격자의 제출 서류 (2)면접대상자 제출서류 참조
- 선고 내용: 연구계획 수립정도, 학교 성적, 추천서 등 제출서류, 유학의지, 인성, 잠재성 등
- 선고 방법: 각 응시분야별 면접일정을 정하여 실시하며, 면접 순번에 의해 1인당 약 15분 정도 실시.
* 최종 필기선고 30%, 서류심사 30%, 면접심사 40%를 합산하여 성적 상위자 결정
- 결과 발표: 2011년 7월 7일(목)이전까지 1차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예정
- 추천 인원: 41명이내 예정, 보결자 약간명 추천예정(과거 최종합격 실적, 2011년 41명, 2010년 51명, 2009년 55명)

(4) 제 1차 전형의 결과 통지는, 각 재외공관이 별도 지정하는 일시로 한다 .

(5) 이 제 1차 전형에 합격한 후보자는, 제 1차 전형 후, 8월말까지 희망하는 일본의 대학으로 직접 연락을 하여, 대학원생 또는 연구생으로서의 입학허가서, 혹은 연구생으로서의 수락내락서(이하, 「입학허가서 등」이라고 한다.)를 가능한 한 받도록 노력할 것.

(6) 입학허가서 등을 얻기 위한 대학으로의 제출 자료로서는, 재외공관에의 제출서류 일식(신청서, 출신 대학의 성적증명서,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 등에 재외공관의 확인표시가 된 것.) 및 재외공관이 발행하는 제 1차 전형 합격증명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 대학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7) 문부과학성은, 의년 1월말경 재외공관의 제 1차 전형의 결과에 근거, 제 2차 전형을 실시, 배치대학이 결정된 자를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채용한다.

따라서, 재외공관에 있어서의 제 1차 전형에 합격한 자가,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채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주1) 필기시험은, 전원이 수험하는 일본어 시험에 더하여 희망자는 영어를 수험하는 것으로 하여, 이 시험의 결과에 의해 어학 능력을 판단, 직접, 전형에 반영한다. (단, 대한민국에서 응시하는 자는 일본어와 영어 모두 수험해야 한다.)

덧붙여, 일본어 시험은 도일 후의 일본어 교육의 참고 자료로서도 활용한다.

(주2) 예를 들면,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역사, 일본법제 등, 충분한 일본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어 능력이 불충분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시부터, 연구계획에 대해 해외에서의 현지조사를 주로 희망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주3) 제 2차 전형에 합격하였더라도 신청서(별지)에 기입한 어느 대학으로부터도 수용을 허가 받지 못한 자는 자동적으로 불채용이 된다.

6. 대학에의 배치 및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 지도

(1) 대학 배치는, 제 1차 전형 후에 후보자가 대학원 정규생 또는 연구생 등으로서의 입학 허가서를 받은 대학(대학원 정규 과정에의 입학허가서를 얻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연구생 등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학원 정규과정에 배치)을 최우선으로서 문부과학성에서 해당 대학에 대해 수락에 대한 협의를 실시, 승낙을 얻으면 해당 대학에 배치한다. 다만, 희망하는 대학이 공사립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과 관련되는 예산의 형편상, 희망에 따를 수 없을 수도 있다. 덧붙여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입학허가서, 수락내락서 모두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감안, 문부과학성이 관계 대학과 협의하여 배치를 결정한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덧붙여 입학허가서 등을 받지 못하고, 문부과학성이 관계대학과 협의할 경우에 대해, 연구계획이 막연·불명료하거나, 내용적으로 부족 등 불충분한 자, 희망하는 전공 분야가 일본의 대학에서는 연구 지도가 곤란한 자 등은, 관계 대학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채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 대학에 있어서의 강의·실험·실습 등의 연구 지도는,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실시된다.

(3) 일본어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배치대학으로부터 판단되었을 경우는, 통상, 최초 6개월간,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일본어 예비교육기관에 입학, 일본어교육을 받는다. 일본어교육을 수료한 자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배치 대학에 입학한다. 다만, 일본어 예비교육기관에 있어서의 성적 불량으로 인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4의 (1) 참조.)

(4) 학생이 자신의 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배치 대학이 인정할 경우에는, 일본어 예비 교육을 거치지 않고, 연구생 등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대학에 직접 입학할 수도 있다 .

(5) 연구생 등으로부터 대학원의 정규 과정, 혹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과정으로부터 박사과정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수험, 합격하면 진학할 수 있게 되지만, 진학 후도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쳐,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의(2) 참조.)

덧붙여 연구생 등 비정규과정에 재적한 채로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6) 연구생 등으로부터 대학원 정규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연구생 등으로서 재적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학생의 전문분야·능력 등으로 판단하여, 해당 대학의 대학원으로의 진학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주1) 일본의 학교제도상, 석사과정은, 통상, 대학졸업 후(학교교육에 있어서의 16년의 과정을 수료 후)의 2년 과정이며, 또, 박사과정은, 통상, 석사과정 수료 후의 3년 과정으로 되어 있어 이 기간 재학하여, 소정의 단위를 취득해 연구논문을 제출 후,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각각 학위가 주어진다.

(주2) 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에 대해서는, 통상, 4년의 박사과정뿐이다. 이 경우, 입학 자격은,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18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과정이 16년인 경우는, 과정 수료 후, 대학, 연구소 등에서 2년 이상의 연구력을 가지고, 일본의 대학원이 전자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주3) 전문직 학위과정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담당하기 위한 깊은 학식 및 탁월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3년도부터 새롭게 제도화된 전문직 대학원 과정이다. 표준 수업연한은 통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전공 분야에 따라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도 있다. 수료하면 석사(전문직) 학위가 수여된다.

또한, 전문직 학위 과정안에는, 법조양성을 위한 법과대학원의 과정도 있어, 수업 연한은 3년, 수료하면 법무 박사(전문직)의 학위가 수여된다.

(주4) 대학원의 입학 시험은,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어(통상 2개국어), 전공 과목, 논문 등이 부과된다.

7. 응모절차

응모자는, 아래 서류 일체를 재외 공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한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1) 필기시험 응시자 제출 서류: 본 서류는 수험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각 출신 학부의 대학에 제출하여 각 대학이 수합하여 본원으로 일괄 제출해야 함.

- 제출 마감: **2011년 5월11일(수) 14:00이전까지(우편의 경우 5월 4일(수) 소인까지만 유효)**
- 제출 방법: 각 추천기관은 응시자의 제출 서류를 수합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추천자 리스트를 작성(영문 설명과 학점부분을 정확하게 확인, 담당자 서명하고 성적부분에 투명테이프로 붙일 것) 적격자를 기관장 공문서와 함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기일 안에 제출 할 것. 단, 국외교육기관 졸업자는 개별접수를 하되,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해당국 국내대사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실확인증명서 또는 졸업장의 진위여부를 확인 받아 첨부(국문번역공증서와 함께)해야 하며, 추천기관 서류일체(공문제외)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

(가) 추천기관 제출서류: 아래 서류 양식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A. 기관장 공문서(양식 없음, 학교 공문서 양식에 의함) 1매
- B. 추천자 리스트(소정양식) 1부

* 본 리스트는 제출처에 제출하기 전에 추천기관 담당자 메일주소로 전자메일

kyu.ho.cho@so.mofa.go.jp로도 송부해야 함.

- C. 추천대상자 제출서류 추천대상자 전원이 제출한 서류일체(아래 (나)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나) 응시자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A부터 J까지 순서대로 한세트를 만들어 추천기관(출신 대학)에 제출할 것.

- A. 신청서(소정양식, 사진 부착) 원본 1부
- B. 신청서 별지(소정양식, 사진 부착) 원본 1부
- C. 전공분야 연구계획서(소정양식) 원본 1부
- D. 출신대학 발행 성적증명서(출신 학부, 대학원 모두) 원본 1부
- E. 최종 출신대학장 또는 담임 교원의 추천장(소정양식) 원본 1부
- F. 근무처 상사의 추천장(소정양식, 현재 취직된 자만) 원본 1부
- G. 출신대학 발행 졸업증명서(출신학부, 대학원 모두, 졸업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원본 1부(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뒷면에 대학 담당자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기일을 기재한 다음 응시자의 졸업 의사와 확인한 다음 담당자 서명을 하여 제출해도 됨)
- H. 학위논문 개요 등(석사학위 이상 논문이 있는 경우만) 1부
- I. 작품사진 또는 연주 녹음 테이프(미술 음악 전공자) 1점
- J. 응시원서 양식(소정양식, 사진 부착) 원본 1부

(2) 면접 대상자 제출 서류: 본 서류는 면접 대상자가 직접 제출함.

- 제출 마감: **2011년 6월14일(화) 16:00시이전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제출

- 제출 서류: 제출서류 A, B, C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서류양식 D는 전자메일 **kyu.ho.cho@so.mofa.go.jp**로만 발송
 - A. 사진(여권용 사진, C복사본, 신청서에 부착) 3장
 - B. 건강진단서(소정양식) 원본 1매, 복사 3매
 - C. 이미 제출한 필기시험 응시자 제출서류(클립으로만 철할 것), A~I 복사본 3부(사진 부착하고, 신청서 서명란에 자필서명할 것)
 - D. 면접대상자 엑셀파일(소정양식, 이메일로만 송부)

(주1) 위 서류는, 반드시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

(주2)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진에 대해서는, 복사나 컬러프린트는 절대 불가.

(주3)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은, 면접 및 대학 배치시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자신의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주4) 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는, 대학 학부, 대학원의 학년마다 취득한 전과목 성적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성적이 몇 단계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학위취득증명서나 단지 몇 단위로 졸업 등의 졸업증명서는 대용 불가.). 또한, 증명서 원본은 각 소속 기관이 직접 발행한 관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한다. 개별 프린트 또는 팩스 원본서류는 불가함.

(주5) 출신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취득증명서는, 졸업증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으로도 대용가능. 다만, 이 경우는, 해당 출신대학의 책임자의 확인증명을 첨부할 것. 또한, 학부졸업예정자로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학부 재학증명서를 발부 받아, 추천기관 담당관이 재학증명서 뒷면에 졸업예정서 발급일을 기재하고 담당자 서명을 하여 제출할 것. 단, 대학원의 경우 재학증명서로 무관.

(주6) 학위 논문개요 등은, 졸업논문, 발표논문 등의 요약으로 무관하나, 학력 판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유의할 것.

(주7) 해당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할 경우 파일 제목에 추천기관명 또는 응시자 성명으로 바꾸어 송부할 것.

(주 8) 제출서류에 반드시 연필로 A~J 번호를 맨 앞장 우측 상단부분에 적어서 제출할 것

8. 기타

(1) 도일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대학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충분히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일 후, 생활 자금으로서 당장 필요한 비용을 미화 1,500달러 정도 준비해 둘 것.

(3) 숙소에 대하여

① 국립대학의 유학생 숙소

국립대학에는 유학생을 위한 전용숙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자가 희망할 경우, 소정의 조건하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거실수에 제한이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③ 민간의 숙소 등

상기의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기숙사나, 대학이 알선하는 민간의 숙소에 입주하게 된다. 가족용의 숙소의 확보는 지극히 곤란한 상황에 있으므로, 유학생이 도일 후, 숙소를 확보한 후, 배우자·가족 등을 불러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모집요강, 신청서류에 병기된 영문은 편의상 붙여 넣은 것이고, 영문에 의한 표현이 일본어 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재된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주한일본대사관에 문의할 것.

(5) 이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또는 기타 의문이 있으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조회하여, 그 지시에 따를 것.

(주) 본 내용을 추천기관 이외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얻어 사용할 것(무단 사용 금지).

<참고자료>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kr.emb-japan.go.jp/>
 - 서류제출:
 - 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 조규호 앞
 - 전화: 02-765-3011, 팩스: 02-742-4629,
- 전자메일: **kyu.ho.cho@so.mofa.go.jp**